

2023.07.17. 1차 제정
2025.06.17. 2차 개정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2025. 06. 25

담당	팀장	부문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사장
조 양호	곽기만			

목 차

제 1 장 총 칙	3
제 1 조 (목 적)	3
제 2 조 (적용범위)	3
제 3 조 (정 의)	3
제 4 조 (안전보건의 최우선)	3
제 5 조 (각 부서의 의무)	5
제 6 조 (근로자의 의무)	5
제 2 장 조직 및 직무	5
제 7 조 (안전보건관리조직)	5
제 8 조 (안전보건직무)	5
제 9 조 (건의 및 지도·조언의 조치)	8
제 10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9
제 3 장 교 육	9
제 11 조 (안전보건교육)	9
제 12 조 (외부위탁교육)	10
제 4 장 안전관리	10
제 13 조 (안전관리계획)	10
제 14 조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10
제 15 조 (설계·성능·완성·정기검사)	11

제 16조 (자체검사)	13
제 17조 (안전점검 및 순찰)	13
제 18조 (안전작업허가서)	14
제 19조 (표준안전작업지침)	17
제 20조 (위험물 취급)	18
제 21조 (표준안전관리비)	18
제 22조 (안전표지)	18

제 5 장 보건관리 18

제 23조 (건강진단)	18
제 24조 (작업환경측정)	18
제 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19
제 26조 (유해부서 보건수칙)	19
제 27조 (보 호 구)	19

제 6 장 사고조사 25

제 28조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25
제 29조 (비상연락체계도)	25
제 30조 (재해분석)	25

제 7 장 기 타 27

제 31조 (무재해운동)	27
제 32조 (상 별)	27
제 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8
제 34조 (문서의 기록·보존)	28

부 칙 28

제 · 개정 이력

[illegible]

안 전 보 건 관 리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근무하는 전 직원과 공장을 출입하는 방문객, 협력업체 작업자 및 공사 작업자에게 적용한다.

제 3 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대재해라 함은 산업재해 중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2. 관리감독자라 함은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안전담당자라 함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험방지가 필요한 작업에 대해 직·조·반장의 직위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은 별표1과 같다.
4. 보호구라 함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각종 보호구 및 안전관련 측정 장비를 말한다.

제 4 조 (안전보건의 최우선) 안전보건에 관한 최우선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생산은 안전의 기초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조치되어야 한다.
2. 위험이 수반되거나 내포되어 있는 업무를 지시하거나 비상연락을 취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보건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3. 계획, 생산 기타 시설의 정비와 설계 및 그 시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안전보건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1]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작업

1. 고압실내 작업.(잠함공법 기타 압기공에 의하여 대기압을 넘는 기압하의 작업실 또는 수갱 내부에 있어서 행하는 작업에 한한다)
2. 아세틸렌 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를 사용하여 행하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발생기·도관등에 의하여 구성되는 용접장치에 한한다)
3. 밀폐된 장소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 용접작업
4. 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5. LPG·수소가스등 가연성·폭발성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작업.
6. 화학설비중 반응기·교반기·추출기의 사용 및 세척작업.
7. 화학설비의 탱크내 작업.
8. 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9. 분말·원재료 등을 담은 호퍼·사이로등 저장탱크의 내부작업.
10. 설비에 의한 물건의 가열·건조작업.
11. 집재장치 또는 운반색도의 조립·해체·변경 또는 수리작업 및 이들 설비에 의한 집재 또는 운반 작업.
12.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프레스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3. 목재가공용 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4. 운반용 하역기계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5. 1톤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이하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기계에 의한 작업.
16. 건설용 리프트·곤도라를 이용한 작업.
17. 주물 및 단조작업.
18. 전압이 75V 이상의 정전 및 활선작업.
19.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
20.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21. 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 작업.
22. 터널 안에서의 굴착작업 또는 동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콘크리트 작업.
23. 굴착면의 높이가 2m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작업.
24. 높이가 2m 이상인 물건을 쌓거나 부리거나 이동시키는 작업.
25. 선박에 짐을 쌓거나 무너뜨리는 작업.
26.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27.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8. 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이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29. 처마 높이가 5m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의 설치 작업.
30. 콘크리트 공작물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31. 보일러의 설치 및 취급작업.
32. 게이지 압력이 1kg/cm² 이상으로 사용되는 압력용기의 설치 및 취급작업.
33.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34. 맨홀작업.
35. 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36.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37. 연취급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
38. 4알킬연등의 취급업무로서 드럼통 기타 용기를 취급하는 작업.
39. 로봇작업.

제 5 조 (각 부서의 의무) 생산능률을 향상시키고 안전보건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서 수반되는 각 팀·Part·실(이하 “각 부서”라 한다.)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공된 안전보건정보를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려야 한다.
3. 생명과 재산상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사전에 색출·제거함으로써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안전보건관계부서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5.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기타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유해물질을 제조, 수입하거나, 건설물을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함에 있어서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용상 산업재해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규정에서 요구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제반사항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계부서 및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 2 장 조직 및 직무

제 7 조 (안전보건관리조직)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조직은 별표2와 같다.

제 8 조 (안전보건직무) ①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는 공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 관리하고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별표2] 안전보건관리 조직표



②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당해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의 확인·감독
5. 당해 사업장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안전관리자는 사업장에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과 법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안전보건관리규칙에서 정한 직무

④ 보건관리자는 사업주는 사업장에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 9 조 (건의 및 지도·조언의 조치)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사업주나 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인 경우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직무·권한 등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근로자인 제2호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9명에서 그 위원의 수를 제외한 수를 말한다)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같은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안전관리자(제16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3. 보건관리자(제20조제1항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 한정하되,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보건관리전문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를 말한다) 1명

4. 산업보건(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이하 “건설공사도급인”이라 한다)이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근로자위원: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및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2. 사용자위원: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및 안전관리자

제 3 장 교 육

제11조 (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근로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하여 재교육을 실시하거나 경위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안전보건교육별 대상자, 주관자, 시간(주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교육은 전 근로자에게 매월 2시간이상 환경안전팀에서 주관하여 시행하거나, 관리감독자

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관리감독자에게는 연간 16시간이상의 외부 위탁교육 또는 통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채용시 교육은 신규입사자에 대해서 업무 배치전에 인사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 안전관리부서가 8시간이상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요청에 하여 자체교육으로 전환 실시 할 수 있다.
 3. 작업내용변경시 교육은 사무직에서 기술직으로 이동한 경우에 인사담당부서의 요청에 의해 안전 관리부서가 2시간이상 실시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요청하여 자체교육으로 전환 실시할 수 있다.
 4. 특별교육은 별표1의 각호의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안전 담당자가 1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5. 외부작업자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 ③ 교육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된 교육내용에 따라 실시하며 필요시 관계교육기관에서 실시 하는 외부위탁교육으로 전환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외부위탁교육) 안전관리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자, 관리 감독자, 안전담당자 및 유해 위험한 기계·기구등의 현장관리자등에 대해서 매년 1월중에 수립하는 연간 안전교육훈련 계획에 의거하여 외부위탁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 4 장 안전관리

제13조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부서는 매년 1월중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서는 계획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기계·기구등의 방호조치) ①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과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에는 별표3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방호조치에 필요한 방호장치에는 검사기관의 성능검사 검정품만 사용해야 하며, 검사기관이 인정 하는 외국기관의 인증수입품도 사용이 가능하다.

③ 각 관리감독자는 당해 방호장치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안전관리자의 허가 없이 방호장치를 제거하거나 개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설계·성능·완성·정기검사) ① 검사별 대상 기계·기구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검사 :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2. 성능검사 :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3. 완성검사 :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4. 정기검사 :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② 제1항의 기계·기구는 지정 검사기관의 검사에 합격했거나, 수입품일 경우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외국기관의 검사에 합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정기검사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부서에서 매년 1월중 년간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④ 정기검사대상 기계·기구를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안전관리부서의 정기검사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검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별표3] 유해·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기구 및 설비등

1. 프레스 또는 전단기에는 방호장치
2.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용접장치에는 안전기
3. 방폭용 전기기계·기구에는 방폭구조전기기계·기구
4. 교류아아크 용접기에는 자동전격방지기
5. 크레인·승강기·곤도라·리프트에는 과부하방지장치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방호장치
6. 압력용기에는 압력방출장치
7. 보일러에는 압력방출장치 및 압력제한스위치
8. 로울러기에는 급정지장치
9. 연삭기에는 덮개
10. 목재가공용 둥근톱에는 반발예방장치 및 날 접촉예방장치
11. 동력식 수동대패에는 칼날의 접촉예방장치
12. 복합동작을 할 수 있는 산업용 로봇에는 안전매트 또는 방호울
13. 정전 및 활선작업에 필요한 절연용 기구에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14.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에는 비계·파이프 써포트 등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설기자재

※상기의 기계·기구중 동력에 의하여 작동되는 기계·기구에는 상기의 조치외에 다음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작동부분상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 회전기계의 물림점(로울러·기어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제16조 (자체검사) ①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기계·기구별 검사주기는 다음과 같다.

1. 크 레 인 : 6개월에 1회 이상
2. 승 강 기 : 매월 1회 이상
3. 압력용기 : 6개월에 1회 이상
4. 화학설비 : 1년에 1회 이상
5. 국소배기 : 매년 1회 이상

- ② 자체검사에 대해서는 기계·기구를 운영하는 각 부서에서 매년 1월중 연간 검사계획을 작성하여 관리하며, 자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검사 후 7일 이내에 안전관리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 ③ 자체검사시 지적되어 사용상 적합하지 아니한 기계·기구에 대해서는 사용 중지 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수리·개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④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제17조 (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부서의 안전순찰은 1일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전순찰일지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 ② 부서별 안전점검일지는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자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작성된 일지는 1년간 보존한다.
- ③ 부서별 안전점검일지는 각 부서별로 실정에 알맞도록 작성하되 다음의 점검항목을 포함한다.
 1. 기계장치의 청소, 정비, 안전장치 부착상태
 2. 전기설비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표시판의 설치상태
 6. 정리·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점검상태
 7. 기타 안전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상태
- ① 모든 작업자는 작업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 ② 부서별 안전점검일지는 최상위 관리감독자까지 보고하며, 안전관리부서의 안전점검 일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까지 보고한다.

- ③ 점검결과 지적된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서면을 통하여 지도·조언한다.

제18조 (안전작업허가서) ① 유해위험요소가 잠재되어 있는 공장내에서 시운전 또는 운전 중 점검, 정비, 교체, 배관연결, 전기·계장 등의 작업을 수행할 때 작업 전에 근로자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하여 명문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② 작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화기작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 물질의 점화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상온작업

노출된 화염을 사용하거나 전기, 충격에너지로부터 스파크가 발생하는 장비나 공구를 사용하는 작업 이외의 작업으로서 유해위험물 취급작업, 위험설비 해체작업 등 유해·위험이 내재된 작업을 말한다.

3. 보충적인 작업

화기작업 또는 상온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충적으로 병행하여 수행되는 작업을 말한다.

- ③ 작업 허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기작업 허가

2. 상온작업 허가

3. 보충적인 작업 허가

(1) 제한공간출입작업 허가

(2) 전기차단작업 허가

(3) 굴착작업 허가

(4) 고소작업 허가

(5) 방사선작업 허가

- ④ 작업허가의 작성이 필요한 대상지역을 구분하되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지역과 그 외 인접, 일반지역으로 구분한다.

1. 위험지역

유해·위험물질을 저장, 사용·취급·제조하는 지역으로서 화재·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의 가능성이 있는 공정지역을 말한다.

2. 일반지역

위험지역과 구분된 인근지역을 말하며 비교적 화재·폭발 등의 위험도가 낮은 일반 행정 및 지원 부서 지역을 말한다.

⑤ 작업허가서의 작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지역내에서 설비·기기의 점검, 정비, 교체, 배관연결, 전기·계장 등의 작업을 수행 할 때에는 사전 작업 허가를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2. 화기작업 또는 상온작업과 병행하여 보충작업이 필요할 때는 작업 전에 추가로 해당 작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작업허가서의 작성, 허가 및 확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1. 작업허가서의 작성

작업허가서는 작업요청에 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부서 및 도급업체에서(외부공사포함)** 작성한다.

2. 작업허가서의 허가

작업허가서의 허가는 작업지역 운전부서에서 허가한다.

3. 작업허가서의 확인

작업의 위험정도, 크기 및 복잡성에 따라 환경안전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환경안전팀에서 확인한다.

⑦ 작업허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업무한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 수행부서 및 도급업체

작업허가서상의 안전조치사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2. 작업지역 운전부서

작업허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간부터 허가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해당 작업지역을 안전하게 할 책임이 있다.

3. 환경안전팀

운전부서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작업전에 당해작업에 요구되는 모든 안전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⑧ 작업허가서의 작성

1. 허가서 작성자는 허가서 작성에 앞서, 당해 작업의 현장 감독할 자 또는 작업담당자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작업에 필요한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당해 작업의 안전과 관련하여 인근의 다른 공정지역 책임자에게 당해 작업수행을 알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운전부서 책임자의 협조 서명을 받는다.
3. 작업자는 작업허가서의 작업내용에 대하여 작업 조건이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인수 서명

한다.

4. 작업허가 작성자는 작업허가서 중 작업 허가 시간, 수행작업 개요, 작업상 취해야 할 안전조치 사항, 작업자에 대한 안전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작업 허가 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작업내용의 변경, 안전요구사항의 변경 및 기타 조건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작성하여야 한다.
6. 작업이 근무교대시간 이후에까지 연장될 경우에는 작성자 또는 업무를 위임받은 자가 작업현장을 재확인한 후 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일치하는지를 파악하고 안전하다는 판단에 따라 작업허가서의 작업시간을 연장하고 다시 확인 서명한다.
7. 허가서는 1부를 작성하여 운전부서의 허가 후 사본을 운전부서에 배부하고 원본은 현장에 게시한다. 안전관리부서에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게시된 허가서에 서명한다.

⑨ 작업의 종료

1. 작업이 완료되면 운전부서는 작업완료사항을 확인한 후 현장에 게시된 허가서에 완료 확인을 서명한다.
2. 작업완료 확인 서명이 된 허가서는 작업 수행부서에서 보존한다.
3. 작업허가서의 기록 보존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⑩ 허가서의 효력

1. 식사 등으로 인하여 작업이 1시간이상 중단되었다가 다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입회자로부터 다시금 안전 상태를 확인 받은 후 서명을 취득하고 작업할 수 있다.
2. 작업시간이 지연되어 허가서의 작업완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작업 허가부서 책임자가 현장에 입회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3. 허가서의 효력은 작업허가서상의 허가의 유효기간에서만 유지된다.

⑪ 안전작업 준비

1. 작업이 행하여지는 지역의 운전부서와 작업 수행부서는 작업허가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술자료 및 도면과 현장 확인을 통하여 아래 사항들을 점검하여야 한다.
 - (1) 수행 작업이 제한공간에서 이루어지는지의 여부
 - (2) 수행 작업에 안전상 전기차단이 필요한지의 여부
 - (3) 수행 작업이 굴착작업과 병행하여 수행되는지의 여부
 - (4) 점검 또는 정비결과, 검사에 방사능 사용에 의한 작업이 수행되는지의 여부
 - (5) 위험지역에서 작업하는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작업 가능성
 - (6) 가연성 물질 또는 독성물질 발생 가능성

- (7)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처리방법
 - (8) 가연성물질 또는 독성물질의 세정방법 및 처리방법
 - (9) 잠겨진 밸브나 막힌 배관사이에서 액체가 열팽창 가능성
 - (10) 설비 또는 기기의 내부구조(내부포켓 또는 드레인 등)상 유해·위험물질이 잔류할 가능성
 - (11) 환기용 점검구 또는 덮개가 있으며 강제환기장치 설치 필요성
 - (12) 초기 소화 장비의 배치계획
 - (13) 출입 제한 구역 계획
 - (14) 작업 중 현장 입회자를 두어야 할지의 여부
2. 작업수행을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서상의 공정 또는 운전과 관련된 안전조치 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작업허가서상에는 요구하는 안전장구를 준비하여야 한다.
 4. 필요한 경우 허가서에 첨부하여야할 안전에 관한 특수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압력용기 및 배관 개방 절차서
 - (2) 내용물 처리 절차서 등
 5. 작업 수행전 정비 작업자에 대한 공정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표준안전작업지침) ① 공장내에서의 모든 작업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에 의한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표준안전작업지침은 작업에 임하는 부서에서 작성하여 안전관리부서에 지침의 안전성 여부를 검토 받아야 한다. 검토된 표준안전작업지침은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 ③ 표준안전작업지침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산업안전기술기준(KISCO Code)에서 지도·권고하는 지침을 따른다.
- ④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즉시 보완하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의 신규도입 또는 작업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설비의 이상발생으로 인한 수리·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20조 (위험물 취급) ① 현장에서 보관하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등 위험물의 보관은 필요한

최소량을 정하여 안전관리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의 확인을 받아 옥외 저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관계근로자 외는 출입을 제한하고, 화기의 휴대를 통제한다.

- ② 고압가스저장소,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또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장소에 대하여도 관계자외의 출입제한과 화기의 휴대를 통제한다.

제21조 (표준안전관리비) ① 환경안전팀에서는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관리 철저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환경안전팀에서는 도급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공사개시 전 관리조직도 및 서약서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을 행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하는 서류를 공사 개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적용된 계상금액은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안전표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건관리

제23조 (건강진단) ①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작업공정 투입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규정 된 특수작업 부서 근로자에 대해서는 당해 유해인자의 진단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근로자는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보건관리자는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 (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물질안전보건자료) ①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물질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표지를 게시하여야 하며, 자세한 자료는 각 부서에서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비치하여야 한다.

② 공장에 입고되는 모든 유해물질 등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표지의 부착과 자세한 자료의 공급이 선행되어야 한다.

제26조 (유해부서 보건수칙)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부서에서는 근로자의 건강상 필요한 작업수칙 및 보호구 착용 등에 관한 수칙을 게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 (보 호 구) ① 보호구는 공장에 근무하는 전임직원에게 지급·대여하며, 공장을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한하여 대여할 수 있다.

② 지급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4와 같으며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안전관리부서장이 정하는 보호구에 대해서는 지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급·대여 할 수 있다.

③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별표5의 보호구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정을 필한 제품만을 구입하여야 한다.

④ 보호구는 사용상의 결함이 발견되거나 신제품의 개발시 안전관리부서에서 보호구의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보호구의 청구 및 출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를 지급 또는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인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환경안전팀에서 지급 받는다.

2. 보호구의 대여성 품목은 보호구 요청시 대여받은 보호구를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보호구의 사용기간이 별표6의 사용연한을 경과하지 아니하여 재 대여를 요청한 경우에도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3. 환경안전팀은 보호구 요청서 및 지급대장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청구 및 출고 전표에 확인을 날인하며, 청구 출고 전표의 승인자는 과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⑥ 지급 또는 대여한 보호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시킨 자에게는 배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별표4] 지급 또는 대여 보호구

※지급성 품목

1. 방진마스크(면체여과식)
2. 내화학장갑

※대여성 품목

1.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화
4. 안전안경
5. 고글
6. 절연화(저압, 고압)
7. 안전대
8. 보안면
9. 방진마스크(필터여과식)
10. 방독마스크
11. 송기마스크
12. 공기호흡기
13. 귀마개
14. 귀덮개
15. 내화학복
16. 방열복

[별표5] 노동부장관의 실시하는 검정을 받아야 하는 보호구

1. 안전모
2. 안전대
3. 안전화, 안전장화
4. 보안경(고글, 안전안경등)
5. 안전장갑
6. 보안면
7. 방진마스크(면체여과식, 필터여과식)
8. 방독마스크
9. 귀마개 또는 귀덮개
10. 송기마스크
11. 방열복
12. 기타 근로자의 작업상 필요한 것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보호구

[별표6] 보호구의 사용연한

1. 안전화의 파손이 빈번한 공정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보호구의 사용연한을 적용치 아니 할 수 있다.
2. 직접부서란 공장의 기술직원으로 구성된 부서를 말한다.
3. 간접부서란 공장의 사무직원으로 구성된 부서를 말한다.
4. 특별근무자란 직접·간접부서에 해당되나, 보호구의 사용에 따른 소모정도가 당해부서와 상이하여 안전관리 부서에서 특별히 정하는 자로 보호구의 사용연한을 적용받지 않거나, 직접부서나 간접부서로 변경될 수 있다.
5. 상기의 5~8번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대여받는 부서는 그 품목에 한하여 직접부서로 간주한다.

번 호	품 목	부 서 구 분	
		직 접 부 서	간 접 부 서
1	안 전 모	2 년	3 년
2	안 전 화	6 개월	1 년
3	안 전 장 화	1 년	2 년
4	안 전 안 경	1 년	2 년
5	고 글	1 년	2 년
6	절 연 화	2 년	-
7	안 전 대	1 년	-
8	보 안 면	2 년	-
9	방 진 마 스 크 (필터여과식)	수 시	-
10	귀 마 개	수 시	-
11	귀 덮 개	2 년	-

제 6 장 사고조사

제28조 (재해발생시 처리절차) ① 화재, 폭발, 유해화학물질과 위험물질등의 누출로 인한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제본부를 설치하고 통제본부 지휘하에 피해 확산방지, 응급구조 및 복구활동의 비상조치를 실시하며, 비상 조치 조직 및 임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계획서에서 정한다.

② 야간이나 휴·무일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생산팀 선임반장이 지휘하며, 비상연락에 의해 통제본부가 설치되었을 때에는 통제본부에 사고상황과 지휘권을 인계한다. 이때 당직실과 경비실에서는 비상연락을 실시하고 출동인원을 파악하여 통제본부의 지휘에 협조한다.

③ 사고발생시 당해 부서나 업체에서는 재해자의 응급조치를 보건관리자 또는 지정병원과 협조하여 최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연쇄적인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에서 대피시켜야 한다.

④ 선임반장은 사고발생 즉시 사고 상황을 각부 선임팀장 및 안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재해 발생 24시간 이내에 당해 관리감독자가 작성한 별지 제14호의 사고조사서를 안전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장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사고조사를 통한 재발방지를 위하여 사고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5년간 보존한다. 또한, 재해발생현장은 사고조사를 위하여 사고발생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부서의 확인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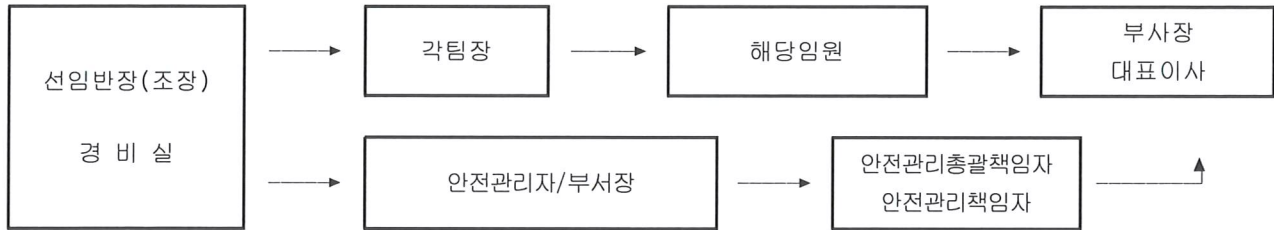
⑥ 안전관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사고조사서를 근거로 사고의 원인 및 대책을 별지 제6호 서식의 재해 조사보고서에 작성하여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비상연락체계도) 재해발생시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표7의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며, 본사, 인근회사, 유관기관의 비상연락 및 비상연락망의 발동은 통제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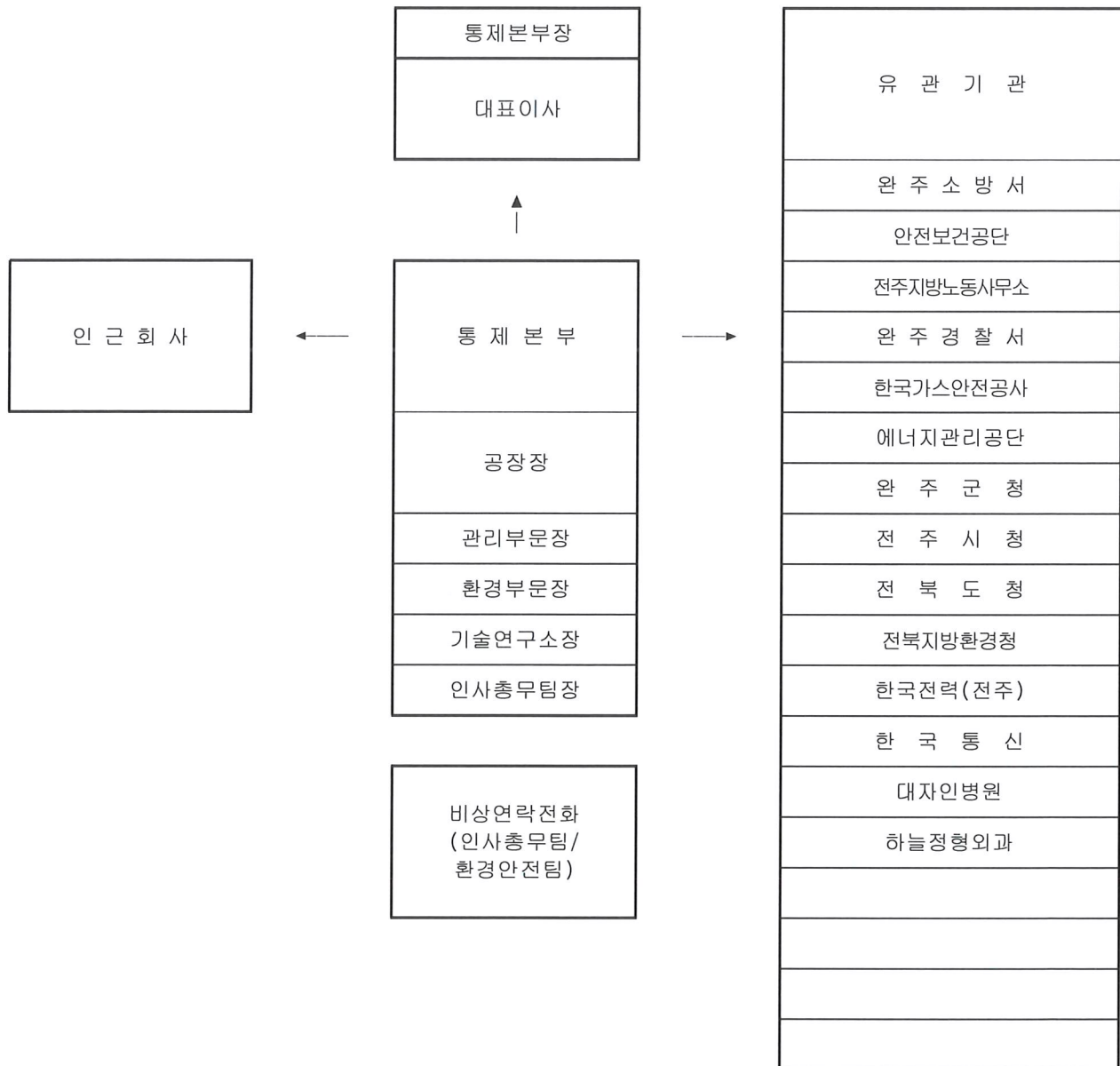
제30조 (재해분석) 안전관리부서에서는 매년 1월중에 전년도의 재해를 총괄 분석·보고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별표8] 비상연락체계도

1. 내부 연락도



2. 외부 연락도



제 7 장 기 타

제31조 (무재해운동) ① 무재해운동은 사업장 무재해운동 시행 요령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② 무재해운동은 각 부서별로 관리감독자 중심으로 시행한다.

③ 무재해달성 일수를 표시하는 무재해기록판을 운영하고, 무재해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④ 무재해운동 달성기법으로 매 작업 시작 전에는 위험예지훈련등과 같은 주기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무재해운동의 일환으로 안전수칙을 위반한 근로자나 부서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별지 제16호의 안전경고장을 발행하며, 2회 이상 발행된 자에게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상 별) ① 안전관리부서는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으며, 포상을 상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실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련된 우수한 제안을 제시한 부서 및 개인

2. 무재해운동 결과 성적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업무처리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관리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불이익을 초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를 상신할 수 있으며, 징계를 상신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위반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2. 각종 재해나 사고를 은폐, 허위보고 및 태만하여 사후처리를 지연시킨 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연간 안전경고장이 3회 이상 발부된 자

③ 징계는 회사 제반 규정에 따른다

제3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회사는 산업재해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하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관계법령에서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업무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보안내규에 저촉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에 응해야 한다.

제34조 (문서의 기록·보존)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한 문서의 기록 및 보존은 다음과 같다.

1. 안전작업허가서 및 보호구관련 서류는 1년간 보존한다.
2. 사고조사서 및 재해조사보고서는 5년간 보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전보건교육결과서

담당	팀장	임원

피교육자소속				교 육 자		(서명)	
교 육 일 시		202 년 월 일, 시 분부터 시 분까지					
교 육 내 용							
교 육 자 명 단 (총 명)							
번호	소 속	성 명	서 명	번호	소 속	성 명	서 명
1				16			
2				17			
3				18			
4				19			
5				20			
6				21			
7				22			
8				23			
9				24			
10				25			
11				26			
12				27			
13				28			
14				29			
15				30			
교 육 내 용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 2. 당해설비 기계 및 기구의 작업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3.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4. 근로자건강증진 및 산업간호에 관한 사항 5.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기타 안전보건관리 사항등(금연, 소방시설, 보호구착용, 재해사례, 장비, 위험시설)							

210mm × 297mm

안전 순찰 일지

20 년 월 일

구분	업무내용	비고
순찰 내용		
지적 및 순찰 결과		
특이 사항		
지시 사항		

담 당	팀장	부문장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대표이사

210mm × 297mm

[별지 제3호 서식]

일반위험작업 허가서

작업요청번호	□ PSM확인				
설비명					
작업명					
작업허가시간	20	년	월	일	□ 08:00~12:00 □ 13:00~17:00 □ 기타(연장(~))
※ 특별사항:					
안전확인후 상기작업을 허가합니다.			신청자:	(서명) 공무/협력업체	
			허가자:	(서명) 공무/공부	
			현장근무자:	(서명) 공무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부분에 □, 확인후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시)	□ ○	통기개방 및 허압확인		□ ○	
발트차단/광판설치/차단표지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전교육	□ ○	작업전 운전요원의 입회		□ ○	
위험물질주의 (용명:)	□ ○				
안전장구					
보호안경	□	분진마스크	□	완로팅장갑	□
조명장치	□	환기장치	□	무전기	□
서류 / 위험성평가					
서류	작업계획서 □ 특수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유 □무
	기술자료 □ 도면 □				변경사항 □유 □무
보증작업허가		허가시간 (합으로 재요청) : ~ :			
밀폐공간 □	가스농도측정 □ ○	측정인:			측정기준 HC 0% □ O ₂ 18%이상 □ CO 30ppm미만 □ CO ₂ 1.5%미만 □ H ₂ S 10ppm미만 □
	조명 □ ○	측정시간:			
	환기장치 □ ○	결과:			
고소 □	임시안전난간 □ ○	안전대 착용 □ ○	작업발판 □ ○	추락방지방 □ ○	
중장비 □	장비명: _____	현장책임자 감독 □ ○	신호수버치 □ ○		
	전선설비 간섭 □ ○	트리거마트 □ ○	기타:		
굴착 □	전기, 가스 소방, 배관 □ ○				
정전 □	차단기기명: _____ MCC차단기 내릴 □ ○ MCC차단기 표시부착 □ ○ 현장표지부착 □ ○ 현장잠금장치 시전 □ ○ 전원복구: 작업완료후 운전부서 입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한다. (전원복구서명) 현장근무자확인: _____ 복구시간: _____ 전기작업자확인: _____				
방사능 □	비인가자 출입금지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시 □ ○ 방사능 도면 첨부 □ ○ 자격증소지 □ ○				
완료시간		방일완료 □ (시 분) / 명일계속 □			
완료확인	현장근무자확인: (서명) - 현장근무자는 CONTROL에 등록				
	공무/협력업체 작업자: (서명) 공무팀 작업책임자: (서명)				
보건, 직책(공무작업자/협력업체) 용역(허가무시)					

화기 작업 허가서

작업요청번호	☐ PSM확인				
설 비 명					
작 업 명					
작업허가시간	20 년 월 일	☐ 08:00~12:00 ☐ 13:00~17:00 ☐ 기타/연장(~)			
※ 특별사항:					
안전확인후 상기작업을 허가합니다.			신청자 : (서명) 공무/협력업체 허가자 : (서명) 공무 현장근무자 : (서명) 공무		
안전조치 요구사항	필요부분에 ㉠, 확인후 ㉡ 표시				
작업구역 설정(출입경고 표시) ☐ ㉠ 통기개방 및 해압확인 ☐ ㉠ 배트차단/당판설치/ 차단표시 부착 ☐ ㉠ 불활성가스 치환 및 환기 ☐ ㉠ 안 전 교 육 ☐ ㉠ 작업전 운전요원의 임회 ☐ ㉠ 위험물접주의 (품명 :) ☐ ㉠					
안전장구					
보호안경 ☐ 분진마스크 ☐ 완보팅장갑 ☐ 안전보호구 ☐ 내산장비 ☐ 조영장치 ☐ 환 기 장 치 ☐ 두 전 기 ☐					
서류 / 위험성평가					
서류	작업계획서 ☐ 특수작업계획서 ☐		위험성평가	작업절차서 ☐ 유 ☐ 무 변경사항 ☐ 유 ☐ 무	
보증작업허가		허가시간 (공무원 근무시간) : ~ :			
밀폐공간 ☐	가스농도측정 ☐ ㉠	측 정 인 :		측정 기준	HC 0% ☐
	조 영 ☐ ㉠	측정시간 :			O ₂ 18%이상 ☐
	환기장치 ☐ ㉠	결 과 :			CO 30ppm미만 ☐
					CO ₂ 1.5%미만 ☐
					H ₂ S 10ppm미만 ☐
고 소 ☐	일시안전단절 ☐ ㉠	안전대 작용 ☐ ㉠	작업발판 ☐ ㉠	추락방지방 ☐ ㉠	
증 장비 ☐	장비명 : _____	현장책임자 감독 ☐ ㉠	신호수버지 ☐ ㉠		
	전선.설비 간섭 ☐ ㉠	트리거머트 ☐ ㉠	기 타 : _____		
금 작 ☐	전기.가스.소방.배관 ☐ ㉠				
정 전 ☐	차단기기명 : _____ MCC차단기 내림 ☐ ㉠ MCC차단기표시부착 ☐ ㉠ 현장표지부착 ☐ ㉠ 현장잠금장치 시전 ☐ ㉠ 전원복구: 작업완료후 운전부서 임회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전원을 복구한다. (전원 복구서명) 현장근무자 확인 : _____ 복구시간 : _____ 전기작업자확인 : _____				
방사능 ☐	비인가자 출입금지 ☐ ㉠ 방사선 위험경고 표시 ☐ ㉠ 방사점 도면 첨부 ☐ ㉠ 자격증소지 ☐ ㉠				
완료시간		방일완료 ☐ (시 분) / 명일계속 ☐			
완료확인	현장근무자확인 : _____ (서명) - 현장근무자는 CONTROL에 등록				
	공무/협력업체 작업자 : _____ (서명)		공무팀 작업책임자 : _____ (서명)		
보관 : 적 색(공무작업자/협력업체) 황 색(허가부서)					

[별지 제5호 서식]

보 호 구 요 청 서

번 호	요청 부서	품목	수량	사이즈	성명	요청 사유	요구 일자	서명	지급 일자
1									
2									
3									
4									
5									
6									
7									
8									
9									
10									
8									
9									
10									
11									
12									
13									
14									
15									
16									
17									

210mm × 297mm

[별지 제6호 서식]

사 고 조 사 서

1. 사고자 인적사항

소속(부서명)	성명	입사일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2. 현황(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사 고 일 시		사 고 장 소	
사 고 내 용			
발 생 원 인			
사 고 피 해			
비상조치사항			
재발방지대책			
상 병 명			

3. 환경안전팀 의견

--

4. 사고조사자

소속	직급(책)	성명	사고자 중요과실	조사일자
		인		

담당	대리/주임	과장/차장	팀장	임원	사장

[별지 제7호 서식]

재 해 조 사 보 고 서

결 재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 부서장	안전관리 책임자	안전관리총 괄책임자

사 고 자	소 속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위		입사일자		사 고 일 자		성 별	
가해자			주민등록번호		직위 / 직종			
목격자			주민등록번호		직위 / 직종			
발 생 개 요								
발 생 원 인								
사 후 예 방 대 책								
안 전 관 리 부 서 의 견								
상기와 같이 안전사고 발생현장을 조사하여 보고드립니다. 2 0 년 월 일 보 고 자 : ①								

[별지 제8호 서식]

안 전 경 고 장
(원 본)

경고번호	
경고일시	20
경고장소	
위 반 자	소속: (서명)
위반내용	
특기사항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안 전 경 고 장
(위 반 자 용)

경고번호	
경고일시	20
경고장소	
위 반 자	소속: (서명)
위반내용	
특기사항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